

학교와 수업 연구 발행 규정

제정 2015년 5월 1일
전부개정 2018년 6월 14일
2차개정 2020년 4월 27일
3차개정 2021년 5월 29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주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이하 '본원'이라 칭함)의 학술연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학술지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원의 학술지 명칭은 “학교와 수업 연구(Journal of Studies on Schools and Teaching)”로 한다.

제3조(편집위원회) 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한다.
- ②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연구원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하지 않는 경우 교육연구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0.4.27.>
- ③ 편집위원은 해당 학문분야에 대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 혹은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하며, 교내외 교수의 추천으로 연구원장이 위촉한다.
- ④ 편집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⑤ 편집위원회는 「학교와 수업 연구」의 발행, 원고접수, 논문심사, 편집 등 학술지 발행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심의한다.
- ⑥ 편집위원회는 「학교와 수업 연구」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과 서식의 개정을 발의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 과반의 동의에 의하여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신설 2021.5.29.>

제4조(학술지 편집)

- ① 학술지에는 학교와 수업을 주제로 한 미발표 연구 논문을 주로 게재한다. 단, 위원회에서 학술지에 게재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 발표물은 게재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회에서는 학술지 편집을 위한 교정을 할 수 있다.
- ③ 학술지 논문 게재 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발행 횟수 및 시기)

- ① 연2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연2회 발행 시 8월 31일, 2월28일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원고의 접수)

- ① 원고는 정시 접수하며,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5.29.>
- ② 접수된 원고는 편집위원이 학술지와 적합성을 검토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심사위원

으로 선정한다. 심사위원은 접수된 원고와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이거나, 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③ 상시 투고된 원고마다 심사위원을 3명씩 선정하며, 타 원고와 심사위원은 중복될 수 있다.

제7조(논문의 심사)

① 원고의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아래의 기준을 참고로 세부적이고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개정 2021.5.29.>

- 연구 주제의 적절성 및 독창성
- 연구 결과의 우수성
- 문장 표현의 명확성
- 연구 내용의 정확성
- 연구 방법의 타당성
- 학계에 대한 기여도

②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심사서'의 서식을 이용하여 평가의 종합의견을 결과로 제출한다.

③ 논문의 심사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며, 심사위원의 평가가 상이할 시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20.4.27., 2021.5.29.>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종합판정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수정후 게재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
게재가능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가능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
게재가능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④ 심사결과는 심사완료 1주일 이내에,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편집위원장은 논문 심사의 결과에 의거하여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투고자는 수정후 게재 통보에 따라 지정된 날까지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본 연구원의 논문발행규정, 논문투고규정,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원고에 대하여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⑦ 「학교와 수업 연구」에 투고된 원고로서 “게재불가”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후 재투고 할 수 있다.

⑧ 논문 투고 시 심사의뢰와 함께 유사도 검사 상세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표절률이 15% 이상을 나타내는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여부를 검토한다.<개정 2021.5.29>

제8조(심사결과 이의제기)

① 논문의 투고자가 심사결과와 게재불가 판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논문의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 이의제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존의 심사위원

에 중복되지 않는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재심사를 진행하고, 본 판정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때 별도의 재심사에 따른 심사비는 발생하지 않는다.

제9조(특별기고 논문의 게재)

- ① 특별기고 논문은 학술지의 특집호 구성 및 기획 의도에 따라, 편집위원회가 특정 주제 및 집필자를 선정하여 의뢰한 원고로서, 공익적이고, 본 학술지의 전문영역에 부합하는 유익한 것이야 한다.
- ② 편집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특별히 기고된 논문의 경우 심사하지 않으나, 학술지 게재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편집위원회의 검토과정을 거칠 수 있다.
- ③ 위 편집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심사를 거치지 않는 원고의 경우, “특별기고논문”으로 표기하여, 일반 심사절차에 따라 게재확정 된 논문과 구분하여 게재한다.
- ④ 특별기고 논문의 저자가 희망하는 경우, 학술지의 일반 심사절차를 거칠 수 있다.

제10조(운영일반)

- ① 발행이 확정된 권호에 대하여, 온오프라인의 발행자료는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가 부여된 연속간행물의 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권호의 발행정보를 갱신하고 부가기호를 배정하여야 하며, 온오프라인의 자료계시와 함께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한다.
- ② 학술지의 별쇄본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으며, 최종 편집된 PDF 파일을 제공한다.
- ③ 학술지 운영일정에 따르지 않는 투고사항, 논문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긴급심사는 운영하지 않으며, 재심사 등의 사유로 해당권호의 최종심사 기일을 초과하는 원고는 다음 발행 권호로 이관한다.

제11조(게재료 및 심사료) 학술지 발행을 위한 소정의 게재료 및 심사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저작권) ‘학교와 수업 연구’에 게재 확정된 논문의 권리와 이익, 저작권(디지털 저작권 포함) 등은 청주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으로 귀속된다. <개정 2021.5.29.>

제13조(기타 결정 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개정 2021.5.29.>

부 칙<2021.5.29.>

- ① 3차 개정 규정은 「학교와 수업 연구」 6권 2호부터 적용한다.